

작업환경측정제도 규제 순응 실태

변상훈¹ · 이관형² · 유계묵² · 피영규³

¹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²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³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Regulatory Compliance for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in Korea

Sang-Hoon Byeon¹ · Kwan-Hyung Yi² · Gae-Muk Yu² · Young Gyu Phee³

¹Dept. of Environmental Health, Korea University, ²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³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nny University

The regulatory recognition, regulatory approval, and observance for employer, inspector, and worker groups were investigated for the Korean measurement system in working environments.

The employer, worker, and inspector showed an agreement of 90~97 % for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This survey showed that the measurement system of working environments has been settled in Korea.

However, this survey showed an agreement of 81~87 % for reporting the results of working environment,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The employer recognized well for th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but the employee did not recognize well them as much as the employer did. Thus, the improvements for the recognition for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and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by the employee are needed.

Key Words: Regulatory compliance, measurement of working environment

I. 서론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민관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과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4월에 출범

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수를 줄이고 규제법정주의를 확립하는 등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개별적 규제의 질 개선 등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 및 공익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순응

접수일: 2009년 7월 29일, 채택일: 2009년 9월 10일

† 교신저자: 변상훈(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Tel: 02-940-2866, Fax: 02-940-2866, E-mail: shbyeon@korea.ac.kr)

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순응 친화적 규제개혁이란 전통적인 통제적이고 표준화된 방식과는 달리 동태성, 유연성, 투명성, 시장원리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설계·구축하여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1998).

규제 순응도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법률의 복잡성, 법과 규제의 목적에 대한 사회 신뢰성의 결여, 절차적 불공정, 높은 규제순응비용, 집행과 조치의 실패, 집행과 설득의 실패, 전반적인 사회의 실패 등이 있을 수 있다(Braithwaite, 1993).

또한 실현될 목표의 잘못된 정의나 규제에 대한 설계의 실패, 규제 집행의 실패, 규제 집행기관인 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따른 실패 등이 있을 수 있다. 규제설계가 잘못된 경우는 규제 순응의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규제가 지나치게 법률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다른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간에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는 등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규제 집행의 측면에서도 규제수단과 도구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규제 순응도는 낮아지게 된다(OECD, 1999; OECD, 2000).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순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괄적 지적이 있어왔고(김태운, 1998), 자율규제(self-regulation) 개념을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효과달성을 위한 대안적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소영진, 1999). 또한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어 왔다(오세민과 박정근, 1997; 정지연과 박승현, 2004; 박정근, 1994; 최상준, 2008; 김정만 등, 2007).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5년 모 전자부품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집단 중독사건, 그리고 2005년에는 태국인 여성근로자들에게 노말헥산(n-hexane) 집단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신경염이 나타났으며, 2006년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DMF) 중독에 의한 사망 5명, 2007년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 1명, 장기 입원 치료 5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KOSHA, 2008). 특히 노동부는 노말헥산 사건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안을 마련한 후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피 규제자(사업주), 규제수혜자(근로자), 규제집행자(집행 공무원)에 해당되는 법률 항목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노동부,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관련한 5가지 세부 규제항목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별 규제

에 대한 인지도, 규제 필요성인 인정도, 규제 준수도를 조사하여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적절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조사는 피 규제 집단에 대해 2005년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중 수도권 인근의 제조업 중심으로 412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412명을 선정 하였으며, 집행공무원은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산업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규제순응에 대한 세부항목들을 설문지로 구성한 후 하위 범주별 개별 설문을 바탕으로 2007년 7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순응도가 낮은 경우 구체적인 미 준수 사유들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도구를 보완하였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규제의 대상이 피 규제자(사업장), 규제수혜자(근로자), 규제집행자(감독관)에 해당되는 법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사는 ①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법 제42조 제1항), ② 측정시 근로자 대표 입회(법 제42조 1항), ③ 작업환경개선(법 제42조 제3항), ④ 설명회 개최(법 제42조 제5항), ⑤ 측정결과보고(법 제42조 제1항)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규제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규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인정도, 그리고 규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준수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각 규제 항목에 대한 응답과 응답자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규제 인지도

작업환경측정실시에 대한 규제의 경우 사업주는 412명 중에 367명(89%)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근로자는 318명(77%)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업환경측

Table 1. Survey results of regulatory recognition

(Unit : No. of respondent(%))

Classification	Response	Employer	Worke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RC*	367 (89)	318 (77)
	NRC [†]	45 (11)	94 (23)
Reporting the results of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RC	352 (85)	289 (70)
	NRC	60 (15)	123 (30)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RC	324 (79)	243 (59)
	NRC	88 (21)	169 (41)
Improvement for working environment	RC	320 (78)	225 (55)
	NRC	92 (22)	187 (45)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RC	297 (72)	187 (45)
	NRC	115 (28)	225 (55)

* RC : Recognition, † NRC : Not recognition
 All ite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y χ^2 -test(p<0.001)

Table 2. Survey results of regulatory approval

(Unit : No. of respondent(%))

Classification	Response	Employer	Worker	Inspect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CN*	103 (25)	140 (34)	55 (59)
	MN [†]	268 (65)	227 (55)	35 (38)
	MNN [‡]	33 (8)	29 (7)	2 (2)
	CNN [§]	8 (2)	16 (4)	1 (1)
Reporting the results of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CN	66 (16)	128 (31)	33 (36)
	MN	288 (70)	235 (57)	45 (48)
	MNN	49 (12)	37 (9)	12 (13)
	CNN	8 (2)	12 (3)	3 (3)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CN	91 (22)	95 (23)	22 (22)
	MN	235 (57)	264 (64)	61 (58)
	MNN	78 (19)	49 (12)	7 (17)
	CNN	8 (2)	4 (1)	3 (3)
Improvement for working environment	CN	58 (14)	119 (29)	34 (37)
	MN	297 (72)	239 (58)	52 (56)
	MNN	49 (12)	45 (11)	5 (5)
	CNN	8 (2)	8 (2)	2 (2)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CN	37 (9)	91 (22)	16 (17)
	MN	297 (72)	255 (62)	65 (70)
	MNN	66 (16)	173 (41)	10 (11)
	CNN	12 (3)	8 (2)	2 (2)

* CN : Certainly necessary, † MN : Moderately necessary, ‡ MNN: Moderately not necessary, §CNN : Certainly not necessary
 All ite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y χ^2 -test(p<0.001)

Table 3. Survey results of regulatory observance

(Unit : No. of respondent(%))

Classification	Response	Employer	Worker	Inspect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WO*	66 (16)	54 (13)	4 (4)
	MO†	272 (66)	239 (58)	74 (80)
	LO‡	66 (16)	95 (23)	15 (16)
	NO§	8 (2)	25 (6)	0 (0)
Reporting the results of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WO	58 (14)	49 (12)	6 (6)
	MO	272 (66)	235 (57)	73 (78)
	LO	70 (17)	103 (25)	15 (16)
	NO	12 (3)	25 (6)	0 (0)
Involvement of worker representativ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WO	33 (8)	45 (11)	0 (0)
	MO	288 (70)	218 (53)	37 (40)
	LO	70 (17)	111 (27)	50 (54)
	NO	21 (5)	37 (9)	6 (6)
Improvement for working environment	WO	41 (10)	37 (9)	1 (1)
	MO	280 (68)	251 (61)	38 (41)
	LO	83 (20)	99 (24)	52 (56)
	NO	8 (2)	25 (6)	2 (2)
Holding presentations for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WO	29 (7)	33 (8)	1 (1)
	MO	264 (64)	243 (59)	24 (26)
	LO	107 (26)	107 (26)	63 (68)
	NO	12 (3)	29 (7)	5 (5)

* WO : well observance, †MO : moderate observance, ‡LO : low observance, §NO : no observance
 All ite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y χ^2 -test($p < 0.001$)

정 결과보고는 사업주의 경우 352명(85%)이 근로자는 289명(70%)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측정 시 근로자 대표입회에 대한 규제는 사업주 324명(79%)이 근로자는 243명(59%)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작업환경개선은 사업주 320명(78%)이 근로자는 225명(55%)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 후 설명회 개최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 사업주는 297명(72%)이 근로자는 187명(45%)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각 규제 항목별 응답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p < 0.001$).

작업환경측정의 5가지 규제내용에 대해 사업주는 72~89%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근로자는 45~77%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주의 인식을 100%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인식 수준은, 작업환경측정실시는 87%, 측정결과보고는 82%, 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는 75%, 작업환경개선은 71%, 그리고 설명회 개최는 63%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

규제자인 사업주에 비해 규제 수혜자인 근로자는 작업환경 측정 규제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제 인정도

작업환경측정실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주는 412명 중에 371명(90%), 근로자는 367명(89%) 및 근로감독관은 93명중에 90명(97%)이 높게 인정하고 있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는 사업주의 경우 86%, 근로자 88% 및 근로감독관은 84%가 측정 시 근로자 대표입회는 사업주 79%, 근로자 87% 및 근로감독관은 80%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측정결과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규제는 사업주 86%, 근로자 87% 및 근로감독관 9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근로자 측에서는 29%, 감독관 측에서는 37%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사업주 측의 14%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설명회 개최 규제 필

요청은 사업주 81 %, 근로자 84 % 및 근로감독관 87 %가 인정하였고 설명회 개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근로자(22 %), 감독관(17 %), 사업주(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규제 인정도에서는 측정실시, 작업환경개선 및 설명회 개최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측정결과 보고 및 측정시 근로자 대표입회는 근로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인정도를 보였다($p<0.001$).

작업환경측정의 5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 인정도는 사업주 79~90 %, 근로자 84~89 % 및 근로감독관 80~97 %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높은 규제인정도를 보였으며 사업주 보다는 근로자와 근로감독관 측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조금 더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규제 준수도

작업환경측정실시 규제의 준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412명 중에 338명(82 %), 근로자는 293명(71 %) 및 근로감독관은 93명 중에 78명(84 %)이 보통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사업주(16 %), 근로자(13 %), 근로감독관(4 %)의 순으로 근로감독관보다는 사업주에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규제는 사업주 80 %, 근로자 67 % 및 근로감독관 84 %가 보통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항목 역시 준수율은 사업주(14 %), 근로자(12 %), 감독관(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시 근로자 대표 입회에 대한 규제는 사업주 78 %, 근로자 64 % 및 근로감독관 40 %가 보통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로감독관 측에서는 잘 준수하고 있다가 0 %, 보통 준수하고 있다가 40 %로 나타나 근로감독관 측에서 볼 때 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결과에 대한 작업환경개선은 사업주 78 %, 근로자 70 % 및 근로감독관 42 %가 보통 이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항목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감독관 측에서는 보통 이하로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작업환경측정 후 설명회 개최는 사업주 71 %, 근로자 67 % 및 근로감독관 27 %가 보통 이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보통 이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근로감독관측에서는 93명 중에 잘 준수가 1명, 보통 준수가 24명으로 상당수의 근로감독관들은 작업환경 측정 후 설명회 개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규제 준수도에서는 측정실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측정시 근로자 대표입회 및 작업환경개선은 근로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p<0.001$).

근로감독관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와 결과보고는 각각 84 %로 준수한다고 하였지만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는 40 %, 작업환경 개선은 42 % 및 설명회 개최는 27 % 정도만이 준수한다고 응답하여, 사업주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작업환경개선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측에서는 78 %와 70 %가 어느 정도 준수이상으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감독관측에서는 42 %만이 어느 정도 잘 준수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상반된 응답을 나타내었다. 결국 감독관측에서는 작업환경개선 규정 준수를 사업주 측에서 58 % 정도는 잘 준수하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설명회개최 규정 준수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측에서는 71 %와 67 %의 준수를 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감독관 측에서는 단지 27 %만이 어느 정도 준수이상으로 응답을 하여 상반된 응답을 보였다. 결국 감독관들의 관점에서는 작업환경개선 규정과 설명회개최 규정 준수에 대해서 사업주 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환경측정실시와 결과보고에 대한 규제 인지도는 70~80 %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측정 시 대표자입회, 작업환경 개선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근로자는 45~59 %의 인지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규제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규제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김정만 등(2007)이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제도에 있어 사업주는 91 % 근로자는 72 %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관형 등(2003)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규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73 %와 63 %로 나타나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의 인식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주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작업환경개선, 측정 후 설명회 개최 등의 경우 근로자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환경측정실시 규제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의 인정도는 약 87~97 %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결과보고, 측정 시 대표자 입회, 작업환경개선 그리고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는 79~93 %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김정만 등(2007)의 보고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89 %와 90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관형 등(2003)은 산업안전 규제 인정도는 근로자가 80% 그리고 사업주가 75%로 근로자 측에서 조금 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의 5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는 사업주의 경우 71~79%, 근로자는 64~71%,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27~84%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작업환경측정실시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에 대한 규제 준수도는 사업주,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은 69~84%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측정 시 근로자대표입회, 작업환경개선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64~78%가 준수한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감독관은 단지 27~42%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관점에서는 사업주들이 작업환경개선, 설명회 개최 규정에 대하여 잘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주 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준수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만 등(2007)의 보고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제도 규제에 대해서 사업주는 98%, 근로자는 73% 준수한다고 응답하여 역시 사업주 측의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관형 등(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준수도는 사업주의 경우 76%, 근로자의 경우 75%로 응답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피 규제집단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규제인지도와 규제인정도 그리고 규제 준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경우 규제인정도가 높은 수준을 보여 규제 집행공무원으로서의 필요성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주 등 피 규제집단의 준수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5년 작업환경측정 혁신위원회가 발족되어 위원회에서 제기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강성규, 2006)과 유사함을 볼 수 있었는데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근로자의 실질 참여 부재,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의 미 개최, 감독기관의 지도 및 감독이 미흡, 사업주의 인식 부재(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보다는 측정실시에 대한 법적 의무만 준수) 등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작업환경 관리방법 개선, 사업주의 자율적 작업환경측정 기회 확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강성규, 200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 입회 및 설명회 개최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고, 집행감독관도 낮은 준수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하고', 1995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율이 10%에 불과한 국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측정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종설명회까지 반드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최상준(2008)의 주장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자율적 관리를 지향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작업환경평가나 모니터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집행감독관들 사이에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규제순응에 있어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으므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자는 측정제도의 인식도 및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근로감독관들은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준수율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현행의 작업환경측정제도를 근로자 또는 위험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위험성을 고지 또는 정보제공(risk notice or informing)하는 것과 근로자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확장된 개념의 '위험성 평가제도'(박두용, 2004; 최상준, 2008)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과정 중 정량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수행하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작업환경측정제도의 5가지 규제항목에 대한 규제순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작업환경측정실시와 결과보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70~80%로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작업환경개선, 근로자 대표입회, 설명회개최에 대해서 45~59%의 인식도를 보여 측정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최종설명회까지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작업환경측정실시에 대한 규제는 사업주,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 모두 90~97%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측정 시 근로자 대표입회, 작업환경개선, 설명회개최에 대해서는 81~8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작업환경측정실시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에 대한 준

수도는 사업주, 근로자 및 근로감독관들은 69~84 %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측정 시 근로자대표입회, 작업장 환경개선 그리고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64~78 %가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근로감독관들은 단지 27~42 %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관점에서는 작업환경개선, 설명회 개최 규정 준수에 대해서 사업주 측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시 근로자 대표 입회, 설명회 개최도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 준수를 향상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추가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환경측정제도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제준용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준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강성규. 작업환경측정 제도 혁신 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이해. 산업보건 2006;4-10.
 김정만, 원정일, 노영만. 합리적인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고서 2007.
 김태윤.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재검토 - 선진국과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 규제연구 1998;7(2):4-3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08.

박두용.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 2004.
 박정균.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인논집 1994;3:167-192.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999;8(2):183-204.
 오세민, 박정근. 작업환경측정방법의 적정화 연구_측정대상 확대 및 측정회수의 개선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1997;1997-03-017.
 이관형, 이경용, 손두익, 서남규, 서광국 et al.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규제 준용 실태. 산업안전학회지 2003;18(4):130-135.
 정지연, 박승현. 작업환경 측정, 분석 방법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04;2004-11-92.
 최상준.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8;18(4):282-292.
 Braithwaite J.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ECD Countries.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s No.3. 1993.
 KOSHA. Occupational Health Newspaper. 2008.
 OCED.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 1998;98.
 OECD.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 1998.
 OECD.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Supporting Materials. PUMA/REG(99)/ ANN. 1999.
 OECD.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PUMA/REG. 2000.